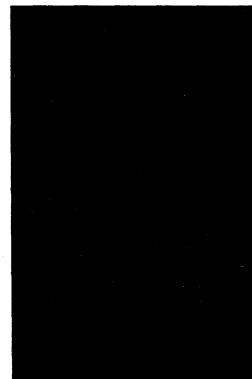


제 1 회 여성문화제 여연발표회 자료집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



# 이름도 빛도 없이

- 장정임 -

워.안.부

누가 역사의 수렁속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대들 이름 잊으랴

무명의 그대들, 빛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온몸으로 온몸으로 쳐받았거니

무시무시한 정글속

진흙 구덩이

포탄 속을 헤쳐가며

그대들 때론 탄약운반원

그대들 때론 부상병 임시간호원

.....

그대들, 하룻밤 수십 명의 왜놈들

날카로운 성기의 장끝에 찔려

아랫도리 피고름으로 아물날 없고

결국 성병으로 말라리아로

나무토막처럼 픽픽 쓰러져 갔다지

컴컴한 지하 방공호 속에 갇혀

누가 그대들 무참히 짓밟았는가

가슴 속 피맺힌 한을 품고

누가 그대들 가슴에 자결의 비수 꽂게

했는가

그대들의 상처받은 자궁

민족의 자궁

저절한 그대들의 이름

워.안.부

우리들의 어머니

매춘관광 꽃비람 타고

외화획득 경제성장 역군되어

식민지가 가난에 몸을 떨던

워안부의 어린 딸들

오늘 또 다시 엔화에

목숨같은 몸을 파누나

끝도 없는 역사의 수렁 속

상처와 억압과 수모

죄악과 죽음

차별과 한만이

그대들의 이름이라고,

작취의 그늘

수지와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그대들의 숙명이라고,

.....

누가 말하는가

우리들의 어머니

워.안.부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시여

# 글심는 순서

여는시 . . . . .	2
여성문화제, 여연발표회를 준비하며 . . . . .	4
연극 ‘반쪽날개로 날아온 새’를 보고 . . . . .	5
여연발표회 주제별 발표문	
정신대에 도전하는 우리의 입장 . . . . .	6
정신대의 강제연행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책임 . . . . .	8
정신대 문제 해결과 민간 위로금?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 . . . .	11
우리의 약속 . . . . .	14

# 여성문화제, 여연 발표회를 준비하며...

“내가 이러는 것은 단지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딸들이, 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난 8월 16일 수요집회에서 정신대 할머니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 50년이 되도록 아직도 일제잔재는 청산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일본군 강제 위안부에 대해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끄럽다고 언급하는 것조차 망설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10대의 꽃다운 청춘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무참히 짓밟히고 50년이 넘게 눈물과 한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기 위해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들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을 이제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억센 손. 이제 복현의 7천 여학우가 꼭 잡아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여성문화제를 맞이하여 각 과에 있는 여성문제연구반원들이 모여서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간위로금’이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과오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려는 일본정부,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한국정부, 그리고 우리들.

할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각 여성단체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복현의 학우들과 정신대의 본질과 실상, 그리고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 ‘반쪽날개로 날아온 새’를 보고서...

- 인문대 독문과 92학번 김재홍 -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질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랑이면.....**  
〈심훈〉의 〈그날이 오면〉 중에서

삼천만 겨레가 일어나 흥겹게 춤을 출 해방의 그날이 왔건만 그리운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서러운 이들이 있었으니 연극 <반쪽날개로 날아온 새>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때는 1945년 해방되던 해 어느날 ‘정신대’라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세 여성이 고향으로 떠나기로 약속했으나 막상 출발을 직전에 두고 서로 갈 등을 빚는데서 연극은 시작된다.

한복저고리를 빨고 또 빨며 흑시라도 남아있을 짐승같은 일본군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는 ‘순이’, 자신은 이곳 위안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어느공장 에서 일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가보지도 못한 일본의 도시 이름을 억지로 왜우려는 ‘봉기’, 떠나는 날 새벽까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중국 군인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금주’.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럽혀진 광거에 대한 봉건적인 죄책감에 갈등하고 결국 ‘금주’만이 고향으로 향한 채 ‘순이’와 ‘봉기’는 도망쳐 버린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금주’는 처량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우리들 할머니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이 자꾸 가슴을 아프게 한다.

참으로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광기 어린 집단의 잔인한 폭력이 이처럼 개인의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고, 그들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발뺌과 진실의 왜곡은 또 한 번 정신대 할머니들의 가슴을 잔혹하게 난도질한다.

하지만 지금도 또 한 번 할머니들의 역사를 빼앗는 또 다른 폭력은 아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은 없어야 한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힘없는 어깨에 잃어버린 반쪽날개를 달아주자.

## 여연 발표회 주제 발표문

# I. 정신대에 도전하는 우리의 입장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정신대(중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자료 폐기나 역사 왜곡, 그리고 순결을 생명보다 소중히 하는 엄격한 가부장제 문화속에서 자신이 당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으로, 드러내기를 꺼렸던 생존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음을 가까이 한 나이에 이르러 50년 동안의 고통과 한을 달고 일어서서 증언대에 나서게 되었다.

지금껏 지구상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 주범으로 독일과 일본을 기억할 것이다. 침략 전쟁을 개시하고 3백만명의 유대인 학살 등 많은 악행을 자행했던 독일은 나치스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일본과는 달리 스스로 속죄의 길을 택했다.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은 인도에 대한 죄, 기본적 인권 침해, 강제 매춘 금지에 대한 위반이다. 조선의 여성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계획적,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일본 군인들의 '성병 예방'을 위해 '황군 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에 불과하였으며, 성(性)과 민족이라는 이중 학대를 받았다. 여성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한 일본의 정책은 여성 학대의 극치이며 '인도죄'에 대한 위반이다.

중군 위안부들은 외출도 할 수 없는 감시하에 있었고 성적 노예로 고통받다가 일본군의 퇴각시에는 한조각의 가치도 없는 소모품과 같이 말살당했다. 조선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전장에 내몰려 성적 희생물이 되었고 생명과 자유 그리고 정조에 대한 인간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다. 그리고 여성의 상품화, 매춘이나 매매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일찍부터 금지되어왔지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한 인신매매라 할수있을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분쟁과 테러에서 여성이 군사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10만 내지 20만에 달하는 식민지 여성들이 성의 대상으로 취급당한 경우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 대상 또한 미혼 여성은 물론이고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도 포함할 만큼 넓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모성에 대한 파괴라는 점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성이 피해자이며, 나라 전체에 대한 강간이라고해도 과언

민족경복대 제10대 자주 중여학생회

이 아닐것이다.

오랫동안 묻혀진 이야기를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 청산이며, 또한 아직도 계속 이 땅에 대해 그들의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한 몇몇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性)과 계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민족의 문제로 인식을 공유해야 하겠다.

## 여연 발표회 주제 발표문

# II. 정신대의 강제연행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

중문과 여연 씨와날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지 50년, 양국이 국교를 재개한지도 어언 30년이 경과하였다. 한·일 양국 관계는 표면상의 수처만 보면 더할 나위없이 활발하고 긴밀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 국민 감정의 저변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노정되어 왔으며, 우리 주위에는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된 일제 과거사의 희생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알려져 여론화된 정신대문제는 연구회가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어 왔고, 한·일 양국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대동아 전쟁의 희생국이었던 여러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만에 달하는 아시아 소녀들은 일본황군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영동한 곳에 보내져 '성노예'로 이용되었다.

최근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또한 피해자들이 여러번 일본 정부에 기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재판소는 이러한 기소를 일본국내법에 적용되는 법조문이 없다는 핑계로 기각시켜 버렸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세계 2차 대전 후에도 나치스의 반인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센 여론에 전범재판을 하였고 현재도 계속 처벌중에 있다.

1968년 11월 26일 UN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법령제한 비적용에 관한 협약"이 서명, 비준, 취득되었다.

이 협약 서문에는 보통 범죄의 시한에 관한 국내법규칙을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예방, 처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위의 협약을 국제관습법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자동우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후 그들의 헌법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확립된 국제법'을 진심으로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성실한 자세에 임하지 않고 다만 국내법으로써 대응해 왔다.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의 입장 변화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입장 변화>

계속 부인해 오다가 1989년 말 한국여성단체에 의해 거론, 여론화되자 민간업자가 한 일이며, 일본정부와 군을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1992년 1월에 공식문서가 발견되자 종군위안부 모집과 경영에 군이 관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자료조사를하여 진상규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1992년 7월 조사결과 종군위안부의 강제 모집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1993년 3월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를 받고 재차 조사한 뒤 강제 모집을 시인하고 보상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 모집도 시인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일괄타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점>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한·일 협정은 어디까지나 청구권 협정상 “청구권”의 범위에서 정신대의 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협정 당시 8개 항목에는 ‘보상청구’, ‘반환청구’로 표현되어 있지 배상청구권이 아니다. 또한 일본이 지불한 금액의 지급대상과 지급액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태평양 전쟁 때 군인, 군속, 노무자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1인당 30만엔 씩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둘째, 유스코겐스(JUS COGENS) 위반으로 무효이다. ‘유스코겐스’에는 노예취급당하지 않을 자유, 그와 유사한 인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 조항은 그러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착오와 기만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양해된 사실 혹은 사정에 관한 착오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 의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조약을 폐기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에도 우리 정부는 단지 진상규명만 요청하고 있을 뿐이고,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 정부 스스로 적극 도울 것이며 일본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의 물질적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결국 65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셈이 돼버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의 생존 가능 연령 및 증거 훼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빠른 시일 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안도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전쟁 전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 특별법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 강제중군위안부라는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관한 입법 절차를 제정하는 것
2. 진상규명작업을 위한 예산 사업을 계획, 실시하는 것
3.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첫째로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1차적 개인별 해당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4. 기타 잔액은 한국 재단 법인을 설립하여 공익 자금으로 운영할 것
5. 한국 이외의 강제 중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출신국별로 별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제 일본은 하루빨리 '국제법에 따르고 인도적 책임을 진다'고 말해야만 성의 있는 태도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곤란한 문제를 전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걸끄럽던 한·일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여연 발표회 주제 발표문

# III. 정신대 문제 해결과 민간 위로금?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고인과 여연 나누나

갈수록 보수화, 우경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군국주의의 망령을 끌어안고 있는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후배상문제를 매듭짓고 있지 못하며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전후배상에 있어서의 그 상징적인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군대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들로 일관하다가 급기야는 ‘민간위로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처음에 군대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자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므로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가 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일본중앙대학 요시미 교수가 방위청 도서관에서 군이 군대위안부에 관여한 것을 밝히는 자료를 찾아내어 발표되자마자 궁지에 몰려 미야자와 총리의 성의 없는 사죄와 보상문제언급으로 무마하려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일부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제일위안부 재판 지원회’, ‘일본의 전쟁 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 등의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항의·성명서 발표, 집회, 서명운동, 소송제기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과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내놓은 것은 기만적인 ‘민간위로금’ 구상이었다.

무라야마 수상이 ‘어쩔 수 없는 안건’으로 제시하고, 그의 제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연립야당안에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과 그 밑에 ‘중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 구성을 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94년 12월 7일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민간기금에 돈을 내나 돈은 사무적인 운영비만으로 제한한다.
2. 군대위안부에게 보내는 돈은 어디까지나 민간모금에 의해 모인 것으로 한다.
3. 정부로서는 민간기금에서 위안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개인보상은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전후 보상문제의 상징적 의미로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엾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식인 일본 정부의 태도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의 성실한 사죄없는 금전 증여는 '자선'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간위로금'이라는 일본정부의 기만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기금안을 반대하고 일본정부로부터의 진상규명과 성실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야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민간기금안'이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실하고 성실한 과거에 대한 속죄의 태도가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전후 보상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만약 우리가 민간기금안을 받아들인다면 일제의 만행에 대해 묵인하고 면죄부를 부여해, 그들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도록 조장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군국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그들의 행동에서 이후 그들이 또다시 저지를 행동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그 기만적인 민간기금안은 일본군 피해당사자에 대한 우롱이자 모독이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시한 민간기금안은 국가재정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무고한 국민들에게 돌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마디로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작태를 똑바로 알고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올바른 진상규명과 충분한 배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이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도 너무나 부족했고 해방된지 50년이 지난 지금이야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한 갑작스러움에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공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부문제에 대해 접근해 나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풀어야 했던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다.

위안부문제를 단지 여성의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보아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일본을 적대시하기 이전에 그 집단강간제도하에서 여성들을 강간한 모든 남자들을 적대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또는 전쟁이란 특수상황 속에서만 이를 바라보아 해결책으로 집단적인 매춘을 제도화했다는, 어쩌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토론 과정상의 오류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속

에서 이를 역사적 관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집단적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관헌주도적 관련을 부인하고 있고 법률적인 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65년 한·일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5년 협정에서는 분명 한국에 대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두개의 국가가 분리되므로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재산의 변환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미변제한 채무의 변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때에는 분명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일본 정부가 그들의 정부차원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해 놓은 민간위로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것이 일본국가가 저지른 비도덕적 반 인류적 범죄행위이므로 마땅히 현정부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의 죄행을 합리화하고 범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과거의 죄행을 합리화하고, 범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로금을 반대한다.

역사적인 심판의 사례없이 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민간위로금은 위안부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우롱이다.

이 할머니들은 물질적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즉 일본측이 과거의 죄행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똑똑히 사죄해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전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사례를 만들고 일본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과서에 사실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후대들에게 옳게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 ▶ 우리의 약속 시작은 한걸음부터...

- ▶ 하나, 여성문화제 기간동안 할머니들에게 보낼 엽서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학우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 둘, 여성문화제 기간동안 정신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모금운동을 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할머니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셋,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풀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본질과 올바른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여성문화제 기간동안 중도와 복지관 선전거리가 마련됩니다.  
꼭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 ▶ 넷,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할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이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달에 한 번 매주 첫째주 수요일에는  
이만이 함께 서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다섯, 대구에도 6분의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중 두분만이 자신을 밝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후원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의 손자, 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간 일본정부의 입장 및**

## **일본의 책임사항**

### **1> 일본의 입장**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한 그들의 주장」

=>사실적인 면에서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65년 한, 일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

<문제점> 65년 한, 일협정시 재산및 청구권속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음.

②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시효가 지났으며 국제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배상할 수 없고 조약에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 수속이 국제법에 없기 때문에 개인 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

<사례> 전쟁원호법의 전쟁 상해 연금 청구 재판 --재판결과-->그들은 일본사람이 아니며 연금은 일본인만이 대상이 된다.

<문제점> '국제법상 시효가 지났다'라는 주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자 처벌 의무가 있으며 국제법상 시효가 없다.

③ 일본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현황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되기 시작.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국가와 군의 부분적 개입 및 강제성을 시인한 것은 1993년 8월 4일 제 2차 진상조사 발표때이다. 그후로는 현재까지 진상조사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법적 책임인정도 피해배상도 전혀 하지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에 대한 재산적, 인격적, 신체적피해회복은 전혀 된바 없고, 현재까지 그 피해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

### **2> 일본의 책임사항 (규정 위반 사항)**

①<한, 일 변호인단 대표 유현석 변호사>-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부녀 매매 금지 조약,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등을 위반했으므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

② 위안부 문제로 일본정부는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 그 법적 근거는 네가지다.

\*인도에 대한 죄를 구성한다. \*노예제 및 노예거래의 금지에 위반한다.

\*강제 노동조약에 위반한다. \*추업관계 3조약에 위반한다.

첫번째 및 두번째는 국제 관습법상의 위반이며 세번째와 네번째는 일본이 비준한 조약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영미법과는 달리, 일본은 성문법 중심주의 이므로 성문화된 조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강제 노동조약과 같이 조약의 명문 규정에 정해진 국제법상의 책무위반쪽이 이해되기 쉽다.

여기서 강제 노동 조약 위반의 근거를 들면

\*노동조약 제 1조 및 제 11조가 여성의 강제노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여성에 「종군 위안」을 강요했다.

\*강제노동은 '건강한 성인 남자'(18세 미만에서 45세 이하)에 한할 것, 연간 50일 이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제 12조),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제 14조), 지하노동을 금지할 것(제 21조), 기업등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허락할 수 없는 것(제 4조)등의 엄한 조건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건에 위반하여 조선인 강제 연행이 행해졌다.

## **지금까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 경위**

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65년 협정으로 외교보 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보았지만 일본정부는 처벌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했고, 일본정부에게 스스로의 책임이행을 촉구해 보았으나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동정이나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직접 국제법상 주체로서 나서게 되었으며 그 방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 분쟁해결이 가능한 PCA에 의한 중재판정을 받는 길이다.

### **2>4년 넘게 피해자 할머니와 여러 단체들이 같이 노력한 성과**

①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개인적 명예를 잃어지고 숨어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깨닫고 당당하게 역사의 증언자로 나서게 되었다.

②은폐되었던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범죄가 UN등 국제사회에 폭로되어 일본정부가 국가에 의한 성노예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③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을 함께 풀려고 하는 세계여성의 연대가, 특히 아시아 각국 여성의 연대 운동이 진행되었다.

### **3>국제 중재 재판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대협의 활동**

①국내에 PCA운동의 기반 확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예)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와 PCA지지를 위한 지방 순회강연 및 서명작업

②국제적 선전 작업의 강화. 예)북경세계 여성대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름

③아시아 피해국간의 연대 강화

④사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에 맞는 진상규명작업 촉진. 예)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 발간, 할머니들의 현실과 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 **4>정대협에서의 국내여론 확보를 위한 현재 활동**

①한국정부에 대한 로비작업을 하고 있다.

② 변호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③ 국내 여론화 활동 -> 현재 국내에서 PCA에 대한 지식도 열악하거나와 '일본정부가 과연 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뒤에 스스로 더이상의 관심을 갖기를 포기하는 대중이 많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응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며 매주 수요정기 집회에서의 홍보를 해가고 있다.

### 5>민간 위로 기금안에 대하여

- 「민간 위로 기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정책을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국제적 권고와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일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안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위로금요구로 변질시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그들의 운동을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이니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사죄,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그런데 위로금안은 이것을 돈문제로 환원 시킴으로써 할머니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

### 6>현재 PCA에 가는 이유

① 일본정부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② 현재 일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관여의 민간위로금안은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이중의 모욕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은 위로금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은 일본정부의 범죄성을 밝힘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갈기갈기 찢기운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다.

\* 범죄의 성격상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지금까지는 제소할 의사가 없으므로 차선의 방법으로 PCA의 객관적 견해를 구하고자 한다.

##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 계획

1> 앞으로 우리는 PCA 제소에 일본정부가 응하게 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법적 배상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여론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일본정부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2> 국제 여론을 이용한다.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게 아시아연대의 힘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연대운동을 시작.

3>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정치영역, 경제부문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건이다. 현재 정대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유엔가입국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이다.

### 4>PCA의 운동적 의미

① 자신의 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책임을 세계에 확인시키고 PCA를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②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

③ 할머니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본정부의 물질적 회유에 굴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맞서 스스로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이긴 당당한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

④ 만약 국제중재재판을 일본이 받아 들인다면 일본이 적어도 국제법은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간의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과 배상방식

-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는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강간으로 인한 배상에 그칠 수 없다. 체포, 강금, 강간의 일련의 연속적 범죄로 인한 자신의 피해, 그 가족들간의 고통, 자유의 상실, 육체적 그리고 건강상의 부상과 그 손해, 일본군 부대와 그 장병들을 위해 행한 노역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고통으로부터의 위자료등이 모두 배상의 범주에 포함되고 배상액수의 산정기준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예) 정조를 침해한데 따른 일본국내의 손해배상 케이스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1회의 강간만으로도 가해자의 월급의 16개월치를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4급 정도의 상이군인들의 경우 매년 3백만엔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의 4급 상이군경의 대우만 받더라도 1억 5천만엔(3백만엔/50년)은 된다.

### ★피해자의 현 상황

-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의 금전적 도움은 실로 절박한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매달 보조하고 있는 15만원의 생계지원비만으로는 최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권을 그들에게 생존기간동안 주기로 했지만 실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희생자들은 '강제 군대 위안부 피해자 대책 협의회'를 조직하여 일본정부와 직접 담판을 벌여 배상을 받겠다는 등의 조급증을 보이기도 하였다.